

입 법 예 고

예천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3일

예 천 군



예천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11조)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수집 제한으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변경(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1조, 제12조)

3. 개정규정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- 다. 예산현황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건설교통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항목별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 -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)
 - 전화 054-650-6333 팩스 054-650-6339
-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cheon.go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6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 다음 각호1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 제10조제1항에 따라”로 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조

제4항 중 “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1조에 따른”

제13조제2항 중 “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 같은 조 제5항 중 “3개월”을 “3개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라 함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 2.~4.(생략)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-----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-----. 2.~4.(생략)
제3조(기반시설의 관리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	제3조(기반시설의 관리) ① ----- -----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. ② ---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1.~ 4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 4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리계의 임무)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~3. (생략) ② (생략)	제10조(수리계의 임무) ①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~3. (생략) ② (생략)
제11조(경비의 부과) ① 수리계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 1.~3. (생략) ③ (생략)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	제11조(경비의 부과) ① ----- ----- ---- 제10조제1항에 따라----- ----- 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1.~3. (생략) ③ (생략)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제12조(경비부과의 조정신청) ① <u>제11조의 규정에 의한</u>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12조(경비부과의 조정신청) ① <u>제11조의</u>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예산 및 회계) ① (생략)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 ③~④ (생략)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<u>3개월</u>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.	제13조(예산 및 회계) ① (생략) ② -----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 ③~④ (생략) ⑤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 -----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(앞 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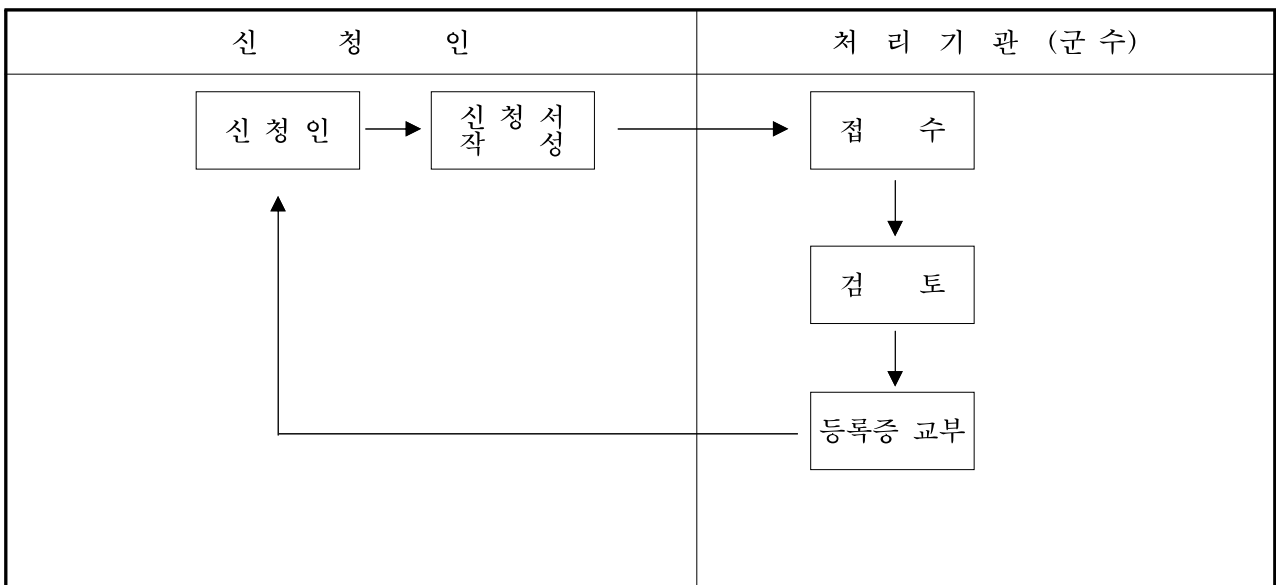
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				처리기간 10일	
신 청 인 (대 표 자)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주소(소재지)				
계 의 명 칭					
계 원 수		명			
개 구 역 면 적		ha			
수 해 면 적		ha			
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					
시 설 명	시설형태	소 재 지	수해면적	비 고	
			ha		
			ha		
			ha		
			ha		
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(대표자) 서명 ㉠					
예 천 군 수 귀하					
※ 첨부서류(각 1부) 1. 규약 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.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. 수해지역구역도(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)				수 수 료	
				없 음	
※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, 부속시설,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					

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

(뒷면)

제출 및 처리기관	예 천 군
근 거 법 규	※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1. 규약 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.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. 수혜지역구역도(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수 리 계 등 록 증

- 계 의 명 칭 :
- 성명(대표자) :
- 생 년 월 일 :
- 주소(소재지) :
- 구 역 면 적 :
- 수 혜 면 적 :

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예 천 군 수 ㉠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〈의견제출〉

입법예고명	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	찬·반 여부	찬·반여부에 따른 의견
	제○조 제○항	찬성	... 이유로 찬성
	제○조 제○항	반대	...이유로 반대 및 ...로(의견제시)

〈의견제출자〉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 (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)

○ 성 명 : ○○○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